

## 특별당규 제정안 발의 경과

- 당헌 제111조(특별당규) 제2항에 의거, 당무위원회(8.19.) 의결을 통해 특별당규(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)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.

### <특별당규 제정안 발의 경과>

- ① 20.7.16. 전준위 기획분과에서 특별당규 제정안 마련
- ② 20.7.21.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당규 제정안 논의
- ③ 20.7.28. 전준위에서 특별당규분과위를 구성하고 특별당규 시안 심의 착수
- ④ 20.7.29. 최고위원회에 특별당규 주요 내용 보고
- ⑤ 20.7.30. 의원총회에 특별당규 주요 내용 보고
- ⑥ 20.8.03. 최고위원회에서 특별당규 제정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 의결(20.7.1.)
- ⑦ 20.8.03.~09. 당 홈페이지에 특별당규 시안 공람
- ⑧ 20.8.11. 전준위에서 특별당규 제정안 의결
  - ※ 공람기간 내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, 일부 내용을 윤리규범에 반영하기로 결정함
- ⑨ 20.8.14. 제281차 최고위서 ‘특별당규 제정안 발의의 건’ 을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
- ⑩ 20.8.19. 제57차 당무위원회에서 특별당규 제정안 발의 의결

### ※ 관련 규정

#### [당헌]

**제111조(특별당규)** ①당헌 제16조제1항제6호의 특별당규는 당헌으로 제정과 개폐의 권한을 별도로 정한 당규를 말하며, 규정 전문 또는 당규의 특정 조항을 특별당규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특별당규 제·개정안의 발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, 또는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요구로 발의된다.

③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·폐의 의결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전국대의원대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(투표율)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<이하 생략>

##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주요 내용

구분		19대 규정 과의 비교	내용
선거권		변경	공직선거법 개정 사항 반영(만 19세→만 18세)
피선거권		변경	만 40세 이상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예비 경선	조건	유지	후보 등록 수가 7명 이상인 때 실시
	선출방법	유지	국민여론조사 50% + 당원여론조사 50% (적합도 조사)
본 경선	선거인단	유지	전국대의원, 권리당원선거인단, 국민·일반당원선거인단, 재외국민선거인단
	모집방법	변경	· 문서접수를 폐지하는 반면 온라인접수 활성화 - 온라인접수와 전화접수 동시 실시 - 유선전화로 접수(1회선 당 2명 제한)한 경우,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주소지 권역에서 순회(현장)투표
	투표방법	변경	· 시군구 투표소투표 폐지하는 반면 온라인투표 활성화 - 전국대의원 : 순회(현장)투표 - 권리당원 및 국민일반당원 : 온라인투표와 ARS투표 병행 실시 -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은 순회경선 투표일정에 따라 주소지 권역에서 투표하고 국민·일반당원의 경우 별도로 지정한 기간(슈퍼위크)에 투표 ※재해·재난 등 상당한 사유 있을 경우, 투표방법 변경 (순회경선 현장투표→온라인투표, ARS투표)
	선출방법	유지	국민경선, 1인 1표
	개표방법	변경	대의원 및 권리당원의 경우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개표 국민·일반당원의 경우 특정일에 개표 ※국민·일반당원 : 3회에 걸친 슈퍼위크에 개표
결선 투표	조건	유지	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실시
	투표방법	변경	· 온라인투표와 ARS투표 병행(현장투표 진행하지 않음) - 유선전화로 신청한 국민·일반당원선거인단의 경우, 본경선 순회(현장)투표에서 투표한 선거인에 한해 ARS투표만 실시
	선출방법	유지	본경선과 동일한 선거인단이 선출
	개표방법	변경	온라인 투표 → ARS 투표 종료 후 일괄개표
	동수 득표시	유지	후보자가 동수의 득표를 한 때 별도 선거인단(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 선거인단)의 투표로 선출